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ART CREATION SUPPORT

1단계_기획지원
2단계_창작활동지원

2.1.(수) ~ 2.12.(월)
신청기간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 290 4672

최우희 <Thorny flower> 45.5x53cm_acrylic on canvas(2022) 캔버스에 아크릴
@ Instagram @artist_chojuhee *2022 화성예술기획을지원 통해 창작된 작품입니다.



예술창작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공모 설명 안내

- 일시 : 2023. 1. 18.(수) 14:00
- 장소 : 동탄북합문화센터 3F 소회의실
- 영상게시 : 1. 26.(목) 예정 *편집본 영상 업로드
- 게시처 : 화성시문화재단 Youtube 동영상 업로드 *영상 내 FAQ 확인 가능
- 문의 : 예술창작지원팀(031-290-4672~3)



부정청탁금지

화성시문화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금품, 청탁, 부당한 업무 신고

화성시문화재단 감사팀

031-8015-8242 | 홈페이지 > 메인화면 맨아래 > 클린신고센터

들어가며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올해부터 지역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보다 집중하여 [기획지원-창작 활동(신작)-우수예술활동]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성의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활동 정진을 응원하며, 이번 지원 사업이 화성시 지역예술 생태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화성시문화재단

2023년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센터 주요 공모계획 안내

	지원 사업명	지원 분야	지원 내용	공모시기	접수 방법	문의처	비고		
예술 지 원 센 터	예술 창작 지원팀	화성예술 활동지원	- 예술 콘텐츠 창작 및 기획과정 활동비 지원(3 ~ 4백만원 정액지원) - 컨설팅, 성과 공유 그룹전시/쇼케이스 운영지원	공고 1월 19일(목)~ 1월 31일(화) / 접수 2월 1일(수)~ 2월 12일(일)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 창작지원팀 031- 290-4672	<예술창작지원> 지원사업 간 동일한 예술인 (단체)의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창작 활동 지원	- 2023 미발표 신작의 창작 및 초연· 전시·상영·출판 등 활동비 지원 - 3백만원 ~ 2천만원 차등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 활동지원)	우수 예술 활동 지원	- 활동 이력이 있는 우수예술 작품의 재공연/전시/출간/상영 등 지원 - 4백만원 ~ 16백만원		공고 2월 20일(월)~ 3월 12일(일) / 접수 3월 13일(월)~ 3월 19일(일)		*전자우편 접수 artsupport@ hcf.or.kr	031- 290-4673
		예술창작 협업지원	협업 분야	- 다양한 분야의 예술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 지원		4월 중		031- 290-4676	
	예술인 지원팀	예술인 자립지원	신진 예술인 자립 지원	- 신진 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 개인당 300만원 x 30명 (생애 1회 지급)	2~3월 중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인 지원팀 031- 290-4603		
			화성형 메세나	-기업을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및 운영 을 지원하도록 협력 (최대 1천만 원 1:1매칭)	4월 중				
		예술인 기반지원	예술창작 공간 활성 화 지원	-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비 지원	2월, 6월 중 (반기별 예정)	031- 290-4602			
			대관료 지원	- 예술 창작 작품 발표를 위한 공연장· 전시장 대관료 지원 (관내 90%, 관외50%)	2~3월 중				
	예술 교육 지원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개인, 그룹, 단체 등의 생활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월 중	화성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예술 교육지원팀 031- 290-469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화성시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 및 대관 안내

(재)화성시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연예술연습공간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화성은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창작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연습실 전경



▲ 중연습실 전경

공간명	공간설명		대관시기	접수방법	운영일
아르코공연 연습센터 @화성 대연습실	대연습실은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1층에 위치해있으며, 방음설계가 되어있는 마루형태의 연습공간입니다.		정기대관 상·하반기 연 2회접수 상반기 : 전년도 11월 하반기 : 당해 5월 수시대관 : 상시 (평일기준 사용 3~5일전 신청 필수)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공연 예술연습공간 대관신청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pspace/ ※문의 예술 창작지원팀 031-8015-8156	매주 화요일 ~ 일요일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 일, 재단이 지 정하는 날
	위치	동탄복합문화센터 문화동 1층			
	규모	240.20㎡(72.66평)			
	구비장비	스피커, CD플레이어, 무선마이크, DVD플레이어, 그랜드피아노, 앰프, 연주용기타재, 지휘자단상, 지휘자보면대, 발레바, 탈의실 등			
	사용인원	60인 이내			
아르코공연 연습센터 @화성 중연습실	중연습실은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지하1층에 위치해있으며, 소규모 창작활동 및 공연준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위치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지하1층			
	규모	89.38㎡(27.03평)			
	구비장비	스피커, CD플레이어, 업라이트피아노, 연주용기타재, 지휘자보면대, TV모니터 등			
	사용인원	20인 이내			

● 사용료

공간구분	오전(09:00~12:00)	오후(13:00~16:00)	저녁(17:00~21:00)	전일(09:00~21:00)
대연습실	20,000원	20,000원	20,000원	40,000원
중연습실	1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2023년 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 주요 개선사항

| 공통사항 |

● 지원 특성별 공모사업 분리 및 집중지원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의 2023년 신작을 집중 지원하는 「화성예술활동지원」 운영
-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의 경우 기존 예술창작활동의 사장을 방지하고, 우수한 예술의 유통을 위해 '활동 이력이 있는 우수예술활동'에 대해 지원
- 장르간, 기술간 경계를 허무는 「예술창작 협업지원」사업 신규 운영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사업명	화성예술가활동지원	화성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예술창작 협업지원
재원구분	도·시비	시비	도·시비	시비
예산(원)	578,600,000	430,000,000	202,000,000	68,000,000
지원금(원)	529,000,000	380,000,000	182,000,000	60,000,000
지원건수	74건	50건	20건	4건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화성시 소재 예술인(단체)
지원요건	신작/이력 제한 및 구분 없음	2023년 신규 기획 및 신작	활동 이력이 있는 우수예술	(신설)
지원구분	- 기획지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 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 기획지원 - 창작활동지원	우수예술지원	(신설)

● 면접심의 간소화 진행

- PT 심사방식 폐지 등 면접심의를 간소화하여 예술인 여러분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화성예술 활동지원	- PT 발표(5분) - 질의시간(3분)	인터뷰 심의 - 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위주 인터뷰 심의 - 이미지 4장 또는 영상 1분 이내 참고자료 제출 가능
모든예술31		면접 진행 없음, 영상자료 심의로 대체 계획서 및 기존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영상 또는 사진자료 위주 2차 심의 진행

● '인건비성 사례비(개인에게 원천징수하는 항목)' 편성제한 완화 예외 신설

- 개별 사업의 특수성 검토하여 인건비성 사례비 60% 편성 가능 여부를 의결 사항에 포함하여 최종 심의진행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공 통	지원금의 50% 이하로 편성	지원금의 50% 이하로 편성하여 지원 신청하나, 최종 심의 진행 시 의결된 특수한 사업에 한해 지원금의 60%까지 편성 가능

● 수익금 권고사항 사전 안내 및 수익금의 '인건비성 사례비'로 사용 가능

- 수익금의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 운영 및 수익금 발생 독려

구분	수익금 기준(권고)		수익금 활용
화성예술 활동지원	구분	기준(권고)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 가능 ⇒ 사용가능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u>'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전반</u>
	기획지원	수익금 미발생	
	창작활동지원	화성시민 입장료 인당 5,000원 또는 무료 권고	
모든예술 31	구분	기준(권고)	
	우수예술지원	인당 10,000원 이내 또는 무료 권고	

● 지원규모 개인/단체 구분 접수 및 일부 규모 확대

구분	기준	변경 후(2023년)		
공통	개인/단체 구분없이 지원신청금액 제한	- 개인/단체 나누어 최소·최대 지원신청 가능금액 선정 - 시각예술 유희공간 대관료 고려하여 평균 지원금액 확대		
		구분	2022년	2023년 예상평균
		화성예술활동지원 (시각예술)	5,860,000원(평균)	개인 6,500,000원 단체 10,000,000원
		모든예술31 (시각예술)	3,000,000원(평균)	개인 5,000,000원 단체 7,000,000원

● 외부 회계검토 필수 기준 완화

구분	기준	변경 후(2023년)
공통	지원금 3백만원 이상 시 외부 회계검토 필수	지원금 4백만원 이상 시 외부 회계검토 필수

● 행정 간소화

- 자부담, 지원금 운영 통장 단일화
- 지원금 내 홍보비 10% 편성 (기존) 의무 ⇒ (변경 후) 권고 사항
- 정산서·성과보고서 통합, 교부신청서 일부 통합 등 제출서류 간소화

| 화성예술활동지원 |

● 전문예술 / 비전문예술 구분하여 공모 및 심의 분리

- 전문 또는 비전문 예술 프로젝트의 구분을 통해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심의 및 사업 운영 지원체계 구축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전문예술/ 비전문예술 구분	별도 구분 없음	전문예술/비전문예술 선택하여 접수 및 심의 분리 ※ 전체 선정작 중 '비전문예술' 선정 비율 10% 내외로 선정

● <기획지원> 부문 컨설팅 운영 및 성과 발표(쇼케이스 등) 운영 방안 개선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매칭하여 컨설팅 운영(7~8월 중)

- 화성시문화재단 '성과 공유 그룹전시 및 쇼케이스 공연(9/20~23)' 운영, 선정작 참여 필수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전문가 컨설팅	• 심의위원회의 평가 진행 • 사업 종료 후 컨설팅 운영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매칭 • 사업 종료 전 컨설팅 운영
<기획지원> 부문 성과공유	-	성과공유 그룹전시 및 쇼케이스 운영(9/20~9/23) ※ 동탄아트스페이스 및 아르고공연연습센터@화성(예정) ※ <기획지원> 부문 지원사업자 필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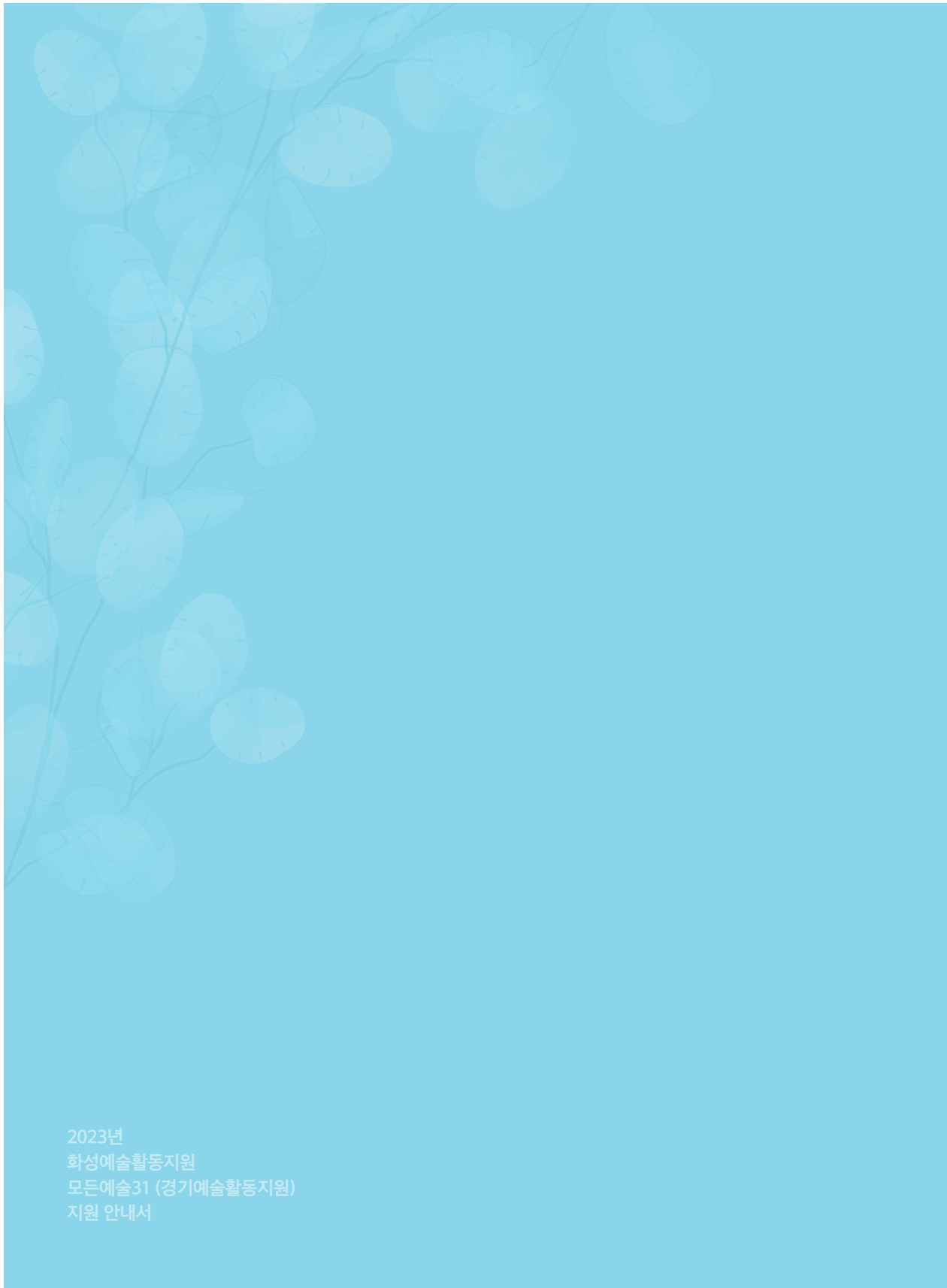
● 기술 융·복합 예술 장르 전 부문에서 지원 가능 및 첨단기술 활용 인센티브

- 첨단기술 활용 사업의 경우 최대 신청금액에서 10% 증액하여 신청가능(전 장르)

구분	기존	변경 후(2023년)
기술 융·복합	별도 지원장르로 구분하여 공모 및 지원	• 지원장르 구분 없이 전 장르에 적용 • 첨단기술 활용사업 지원 인센티브 부여 ⇒ 최대신청금액의 10% 증액하여 지원 가능

2023년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 안내서

2023 예술창작지원 공모사업 안내



2023년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 안내서

1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1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① 공모개요

- **사업명**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 **공모일정**
 - 공고기간 : 2023. 1. 19.(목) ~ 1. 31.(화) <13일간> * 공고일 : 2023. 1. 19.(목)
 - 접수기간 : 2023. 2. 1.(수) ~ 2. 12.(일) <12일간>
 - 면접심의 : 2023. 3. 8.(수) ~ 3. 10.(금)
 - 최종발표 : 2023. 3. 17.(금)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 3억 8천만원(기획지원 20건, 창작활동지원 30건 지원목표)

② 공모구성

- **기획지원** 신규 예술 프로젝트의 창작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 **창작활동지원** 신작의 창작활동 및 초연/전시/출판 지원

구분	예술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기획 지원	공연 예술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안무·음악·콘텐츠·대본 개발 등	4백만원 (정액)	4백만원 (정액)
	시각 예술	시각예술 프로젝트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3백만원 (정액)	3백만원 (정액)
	기획지원	지원 선정자 성과공유 그룹전시 및 쇼케이스 참여 및 발표 필수 (9/20 ~ 23)		

구분	예술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신청가능액
창작 활동 지원	공연 예술	공연 예술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지원 가능 ※ 실연예술의 경우 신규 레퍼토리이면 지원 가능	개인 예술인	
			평균 6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7백만원
			예술단체	
			평균 1천 4백만원	최저 7백만원 최고 2천만원
	시각 예술	시각 예술 창작활동 및 전시 지원 ※ 전시 작품 중 2023년도 창작 작업 포함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6.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1천만원
			예술단체	
			평균 1천만원	최저 8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문학 분야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계약 및 출간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3.5백만원	최저 3백만원 최고 4백만원
			예술단체	
			평균 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계			380백만원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다른 프로젝트라도 1명의 신청자는 [기획지원] / [창작활동지원]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의 경우 최고 신청가능금액의 10%까지 증액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023 신규도입)

※ 동일한 프로젝트로는 이전에 동일한 지원항목(기획지원/창작활동지원)을 지원 받았던 경우 다음 단계의 지원만 가능함.

※ 신청 시 '예술 프로젝트'의 전문예술/비전문예술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전문예술의 경우 전체 선정작의 10% 내외로 선정 예정(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청년 예술인 지원 할당제도」 운영

예술창작지원분야의 전체 선정자 중 10%는 청년(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예술가 또는 해당 청년예술가가 대표인 단체) 예술을 선정하는 제도로, 경합 등 최종 심의 시 반영

※ 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 정의에 따른 연령기준

② 신청자격

• 신청 자격

① 화성시 거주(소재)자

※ 공고일 이전 기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상

② 아래에서 지정하는 예술인/단체

구분	내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만19세 이상의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2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문화관광체육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 이상인 단체
비전문예술단체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등

※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주요 실연자여야 함.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신청 구분	확인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경기도/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신청 불가 대상

- 지원 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화성시 거주(소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공고일 이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

•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

-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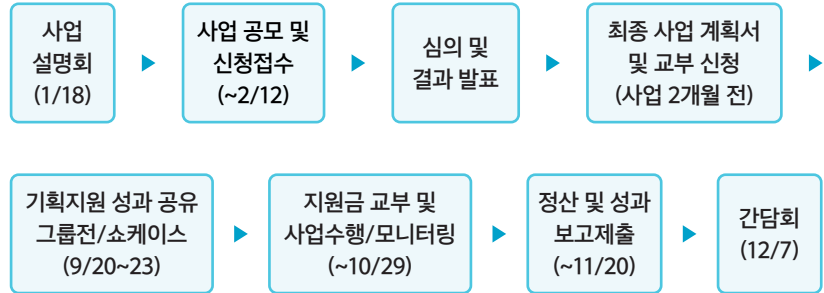
● 중복신청 및 선정

- 당해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다른 사업이더라도,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재)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사업인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 간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 예술인지원팀 및 예술교육지원팀의 지원사업과는 관련 없음.

5 사업추진일정

구분	일정
공고일	2023. 1. 19.(목)
공고기간	2023. 1. 19.(목) ~ 1. 31.(화) <13일간>
접수기간	2023. 2. 1.(수) ~ 2. 12.(일) 14:00 <12일간>
서류심의	2023. 2. 20.(월) ~ 2. 21.(화) * 서류심의 발표 : 2. 24.(금) 18:00 예정
면접심의	2023. 3. 8.(수) ~ 3. 10.(금)
발표	2023. 3. 17.(금) 18:00
사업운영	2023. 4. 1.(토) ~ 10. 29.(일) 까지 완료 필수
그룹전/쇼케이스	2023. 9. 20.(수) ~ 9. 23.(토)
정산서, 성과물 제출	2023. 11. 20.(월) 까지 제출 필수
간담회	2023. 12. 7.(목)

⑥ 추진절차



⑦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A / 공연예술B / 시각예술A / 시각예술B / 문학분야 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총 1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구분	2023년
심의 위원회	· 공연예술A(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연희부문), 서커스, 다원 등)
	· 공연예술B(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국악, 다원 등)
	· 시각예술A(회화, 설치, 조소, 공예/도예 등)
	· 시각예술B(사진, 미디어 아트, 영상/영화, 다원 등)
	· 문학부문(소설, 시, 수필, 비평, 희곡 등)

⑧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우수사례 선정 : 지원구분 및 예술장르별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차년도 지원사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9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 수(회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됨.

- 변경되는 금액이 지원금의 10% 이내인 경우(단, 재료비목, 기타운영비목에 한함)

10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현장 접수 지원 : 고령자(만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2/3 ~ 4)
 - 5일 전까지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기획지원** 공연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 활동비 지원
- **창작활동지원** 2023 신작에 대한 공연예술 작품 창작 및 초연 활동비 지원

② 지원규모

- **기획지원** 정액 4백만원
- **창작활동지원** 최저 4백만원 ~ 최고 2천만원 지원(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규모	
기획 지원	•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단계 지원(기획, 리서치, 안무·음악·콘텐츠·대본 개발 등) • 전문가 매칭 컨설팅 1회 • 9/20 ~ 23 쇼케이스 공연 지원 (무대설비 등 재단 제공) * 참여 필수	영상(아카이빙 공개용 5분 이상), 대본, 음악 등 결과물 사진 등(고화질)	4백만원 (정액)	
		성과보고서		
창작 활동 지원	• 공연 예술 창작활동 및 초연 지원 ※ 정식 공연이 아닌 쇼케이스의 형태로 발표했던 작품 지원 가능 ※ 실연예술의 경우 신규 레퍼토리이면 지원 가능	공연 진행	개인 예술인	
		영상(풀영상 1부, 아카이빙 공개용 15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	평균 6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7백만원
		성과보고서	예술단체	
			평균 1천 4백만원	최저 7백만원 최고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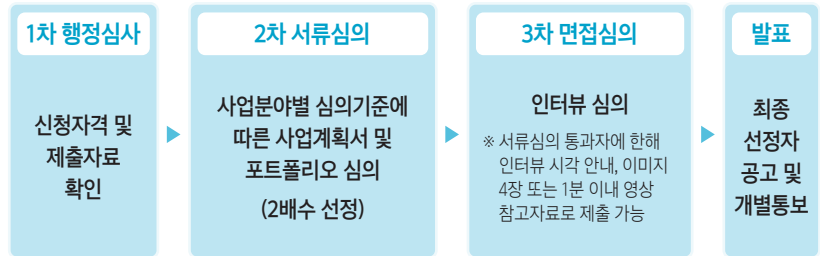
※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의 경우 최고 신청가능금액의 10%까지 증액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023 신규도입)

※ 동일한 프로젝트로는 이전에 동일한 지원항목(기획지원/창작활동지원)을 지원 받았던 경우 해당 프로젝트로는 다음 단계의 지원만 가능함(단 우수사례 선정 등의 사유로 예외 인정).

※ 지원 신청 시 '예술 프로젝트'의 전문예술/비전문예술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전문예술의 경우 전체 선정작의 10% 내외로 선정 예정(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심의방식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미선정작에 따른 개별 통보 없음.

• 심의 기준

구 분	예술성	계획 타당성	예술실적 (질적평가)	창의성	기대 효과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반영	가산점
서류심의	20	20	20	-	20	-	10	10
면접심의	20	-	-	20	20	20	10	10

* <지역 특성반영>항목의 경우 화성시 예술수요·지역콘텐츠·참여자·공간·관객유치 등 다방면으로 심사

※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10점)

6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대표 영상자료 링크로 첨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면접심의 자료
 - 2차 서류심의 통과 시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면접심의 대상자에 한해 다시 안내

• 파일명 설정 안내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기획지원_공연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창작활동지원_공연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⑦ 유의할 점

- 기획지원, 창작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주세요.
(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아래에서 제시하는 수익금 기준에 따른 수익금 발생을 권장하며,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사례비로 사용 가능)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 기획지원 : 수익금 미발생 권장
 - 창작활동지원 : 화성시민 인당 5,000원 권고 또는 무료(할인 적용가격 가능)
- 최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⑧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 ‘공연’ 운영하는 경우 관객 초청 외에 사전 일반관객 모집(온라인 접수 또는 유선접수) 병행 필수
- ※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⑨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기획지원** 시각예술 창작준비·기획과정·연구과정 활동비 지원
- **창작활동지원** 2023 신작에 대한 시각예술 작품창작 및 전시/상영 활동비 지원

② 지원규모

- **기획지원** 정액 3백만원
- **창작활동지원** 최저 4백만원 ~ 최고 1천 2백만원 지원(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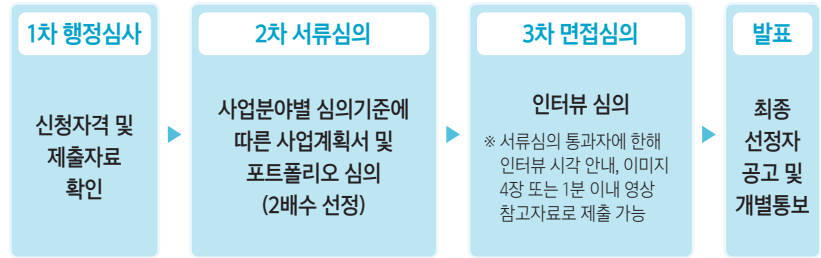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원)	
기획 지원	· 시각예술 프로젝트 위한 사전 작업 지원(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 전문가 매칭 컨설팅 1회 · 9/20 ~ 23 그룹전시 지원(동탄 아트스페이스 전시공간 및 공간 설치, 홍보물 지원) *참여 필수	작품사진(고화질), 연구결과 등 결과물	3백만원 (정액)	
		성과보고서		
창작 활동 지원	· 2023년 신작 창작활동 및 전시/상영 지원	전시/상영 등 진행	개인 예술인	
		전시사진(고화질), 작품사진(고화질)	평균 6.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1천만원
		성과보고서	예술단체	
			평균 1천만원	최저 8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 첨단기술 융·복합 사업의 경우 최고 신청가능금액의 10%까지 증액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음.
(2023 신규도입)

※ 동일한 프로젝트로는 이전에 동일한 지원항목(기획지원/창작활동지원)을 지원 받았던 경우 해당 프로젝트로는 다음 단계의 지원만 가능함(단 우수사례 선정 등의 사유로 예외 인정).

※ 지원 신청 시 '예술 프로젝트'의 전문예술/비전문예술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비전문예술의 경우 전체 선정작의 10% 내외로 선정 예정(적격자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 미신청자에 따른 개별 통보 없음.

• 심의 기준

구 분	예술성	계획 타당성	예술실적 (질적평가)	창의성	기대 효과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 반영	가산점
서류심의	20	20	20	-	20	-	10	10
면접심의	20	-	-	20	20	20	10	10

* <지역 특성 반영> 항목의 경우 화성시 예술수요·지역콘텐츠·참여자·공간·관객유치 등 다방면으로 심사

※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10점)

⑥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면접심의 자료

2차 서류심의 통과 시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면접심의 대상자에 한해 다시 안내

• 파일명 설정 안내 •

⑥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기획지원_시각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창작활동지원_시각예술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⑦ 유의할 점

- 기획지원, 창작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해주세요.
(동일인·단체·의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획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종 성과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다음 단계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⑧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 [창작활동지원] 사업은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필수).
- ※ 동탄북한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⑨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문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창작활동지원** 미발표 신작의 창작 및 출간비 지원(연내출간의무)

② 지원규모

- **창작활동지원** 최저 3백만원 ~ 최고 6백만원 지원(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창작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④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원)
창작 활동 지원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 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 계약 및 출간 의무 *개별 작품은 기발표작품 이어도 수록 가능	책 출간 진행	개인 예술인
			평균 3.5백만원 최저 3백만원 최고 4백만원
		출간완료 후 책 5권, 성과보고서	예술단체
			평균 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⑤ 심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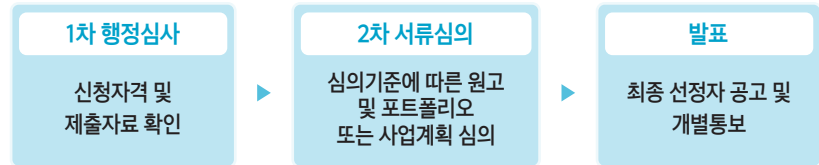
- **심의 기준**

구분	예술성	계획 타당성	예술실적 (질적평가)	창의성	기대 효과	발전 가능성	*지역 특성반영	가산점
서류심의	20	20	20	-	20	-	10	10

* <지역 특성반영>항목의 경우 화성시 예술수요·지역콘텐츠·참여자·공간·관객유치 등 다방면으로 심사

※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우 가산점 부여(10점)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⑥ 필수 제출자료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등단확인 및 주요작품 발표 실적자료 포함 필수)
- 미발표신작, 원고
원고의 60% 이상 제출(PDF 제출)

● 선정자 필수 제출서류

23년 8월까지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선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선정 후 개별안내 PDF 파일로 제출(1페이지에 1면 보기)

● 파일명 설정 안내 ●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창작활동지원_문학부문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확인 예정

⑦ 문학부문 출판
지원 정산안내

- 문학부문의 경우 지원금의 100%를 출간비용(출판사)으로 사용해야 함.
 - 정산서 내 지원금에 대한 영수 증빙 없이 아래 세 가지로 같음
 - 출판물(결과물) 5권, 이체 확인증, 출판 계약서

⑧ 유의할 점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 취소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대표자 및 당사자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⑨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책자 및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을 제작하는 경우

- 간기면 내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3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 동탄북합문화센터 내 오프라인 홍보물 게시 협조 요청 시 게재 도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⑩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박승비 031-290-4672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



2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



2023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①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 **사업일정**
 - 공고기간 : 2023. 2. 20.(월) ~ 3. 12.(일) <21일간> * 공고일 : 2023. 2. 20.(월)
 - 접수기간 : 2023. 3. 13.(월) ~ 3. 19.(일) <7일간>
 - 서류심의 : 2023. 3. 29.(수) ~ 3. 30(목)
 - 영상심의 : 2023. 4. 13.(목) ~ 4. 14(금)
 - 결과발표 : 2023. 4. 21.(금) *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지원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182,000천원(시비 : 120,000천원 / 도비 : 62,000천원)

② 공모구성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	최저
총 지원금 계			182,000천원		
모든 예술31 <경기 예술 활동 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활동(공연, 연극, 음악, 무용 등)지원	개인	8,000천원	4,000천원
			단체	16,000천원	8,000천원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포함)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지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등) ※ 단순 교육프로그램 지원 불가	개인	6,000천원	4,000천원
			단체	10,000천원	6,000천원
	문학분야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시낭송, 시극 발표 등) ※ 단순 교육프로그램 지원 불가	개인	5,000천원	4,000천원
			단체	7,000천원	5,000천원

-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합니다.
- ※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과 중복신청가능하나 1사업 선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분야별 사업비는 신청결과를 통해 신청액 기준으로 배정합니다.
- ※ 본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 기존 모든예술31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동일사업으로는 최대 2년으로 제한합니다.

「서남부권 예술활동 지원할당제」 운영

서남부권 지원할당제 : 전체 선정작 중 10%는 화성시 서·남부권에서 수행되는 예술활동을 선정하는 제도로, 경합 및 최종 심의결과에 반영

※ 서·남부권(송산, 서신, 마도, 비봉, 매송, 팔탄, 장안, 양감면/남양, 우정, 향남읍/새솔동) 활동으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최종 선정 후 예술활동은 반드시 화성시 서·남부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③ 공통 신청자격

● 공통 신청 자격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 ※ 공고일 이전기준

구분	내용
예술인	· 해당분야 전공자(대학 졸업예정자 이상)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예술활동에 관한 세부 기준의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자료참조) · 문화관광체육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패스의 발급이 완료된 자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지정 전문예술법인·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체 내 전문예술인의 구성비율이 50%이상인 단체
예술동호회	·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동호회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신청자가 주요 실연자(개인)이어야 함.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신청 구분	확인 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경기도/화성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예술단체의 경우 지원 신청시 가산점 부여
-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로 가산점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문서로 공고일 이전 화성시 거주(소재)가 확인되어야 함
- 화성시 이외 경기도 거주(소재)자 선정 후 거주지 증빙자료 제출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불가 대상 및 사업

● 신청 불가 대상

- 지원 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공고일 이전 경기도 거주(소재)자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5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에 해당하는 예술단체 선정시, 선정 후 성범죄 경력조회신청서 제출에 관한 증빙 요청(필수절차)

●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시청, 화성시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목적한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지역축제 등의 그 부속 행사로 계획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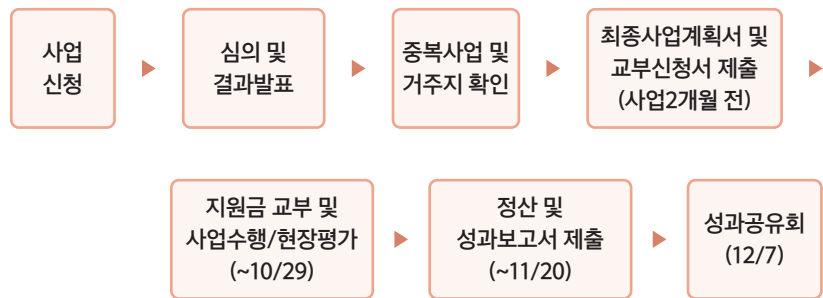
●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다른사업이더라도, 동일한 예술인(단체)은 (재)화성시문화재단의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인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간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⑤ 공모추진일정

구분	일정
사업설명회	2023. 1. 18.(수) ※ 현장설명회 이후 Youtube를 통한 온라인 영상 게시
공고기간	2023. 2. 20.(월) ~ 2023. 3. 12.(일) <21일간>
접수기간	2023. 3. 13.(월) ~ 2023. 3. 19.(일) <7일간> ※ e-mail 및 현장 접수(고령자)
행정심의	2023. 3. 23.(목)
서류심의	2023. 3. 29.(수) ~ 2023. 3. 30.(목)
서류발표	2023. 4. 4.(화)
영상심의	2023. 4. 13.(목) ~ 2023. 4. 14.(금) ※ “공연예술” 분야에 한함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4.7일까지 영상자료 요청
최종발표	2023. 4. 21.(금) 17:00
사업운영 및 모니터링	2023. 5. 1.(월) ~ 2023. 10. 29.(일)
성과공유회	2023. 12. 7.(목)

⑥ 추진절차



⑦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시각예술/ 문학분야 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예술분야별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까지 담당하여 진행합니다.

예술분야	세부분야	심의위원	비고
공연예술	공연예술활동 (공연, 연극, 음악, 무용, 다원 등)	3명	공연/시각/문학 분야별 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3명	
문학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3명	

⑧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상, 정산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0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작품을 선정합니다.
- 심의결과와 차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반영됩니다.

⑨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 (횟수) 50%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사전변경신청하지 않아도 됨.

- 변경되는 금액이 지원금의 10% 이내인 경우(단, 재료비목, 기타운영비목에 한함)

10 접수방법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현장 접수 지원 :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한해 현장접수 지원(3/14 ~ 3/15)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입니다.
 - ※ 지원신청서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11 필수이수교육

-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교육사이트 접속(<https://kawf.edukocca.or.kr>) → 정규과정 내(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계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2023. 11. 30까지 가능)
 - ※ 단체의 경우 대표자만 해당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2023년 경기도내 우수예술작품의 공연예술활동
(공연, 연극, 음악, 무용, 다원 등)

② 지원규모 및 내용

예술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구분	최대	최저
공연 예술	공연예술활동(공연, 연극, 음악, 무용, 다원 등)지원 ※ 기존에 공연 이력이 있는 재연 작품 ※ 기존 레퍼토리를 포함하는 실연 예술 분야도 지원가능	개인	8,000천원	4,000천원
		단체	16,000천원	8,000천원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공고일 이전 기준

④ 심의방식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기준	비율(%)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 활동실적의 질적평가	20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 발전가능성 • 지속적 활동 가능성	20
기획력 평가	예술성	•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가?	20
	보편성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완성도	•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성과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0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 지역예술활성화 기여도 평가 • 지역 콘텐츠 반영	10
가산점		• 지역 예술인(단체) 가산점	5
		• 전년도 우수예술활동 점수 반영	5

● 심의절차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⑤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주요 예술활동실적(포트폴리오 1부 * 영상은 링크로 기재)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연활동 영상자료 1편(러닝타임 10분 이내)
 - ※ 2차 서류심의 통과시 제출하며, 상세내용은 영상심의 대상자에 한해 재 안내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모든예술31_공연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⑥ 유의할 점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작품일 경우를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 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의 결과로 지원 신청액과 결정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 발생시 전액 해당 공연 작품에 재투자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행사·홍보비]전반/증빙 필수
- 금년 평가결과와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심의에 반영됩니다.

⑦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2023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 각 기관 홈페이지 CI 내려받기

⑧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이선화 031-290-4673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2023년 경기도내 우수예술작품의 시각예술활동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등)

② 지원규모 및 내용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	최저
시각예술 (미디어아트포함)	기존작품 전시/출간/상영지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등)	개인	6,000천원	4,000천원
		단체	10,000천원	6,000천원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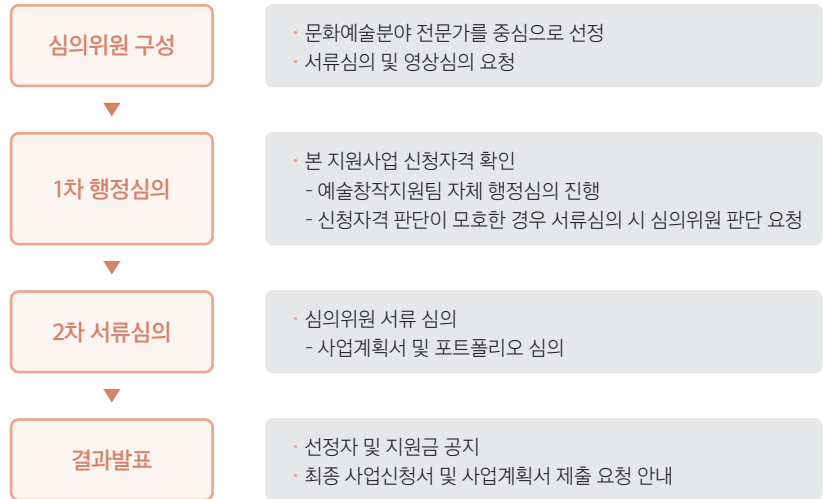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공고일 이전 기준

④ 심의방식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기준	비율(%)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 활동실적의 질적평가	20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 발전가능성 · 지속적 활동 가능성	20
기획력 평가	예술성	·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가?	20
	보편성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완성도	·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성과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0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 지역예술활성화 기여도 평가 · 지역 콘텐츠 반영	10
가산점		· 지역 예술인(단체) 가산점	5
		· 전년도 우수예술활동 점수 반영	5

● 심의절차



※ 계획서 및 기존 예술활동에 대한 활동영상 또는 사진자료 위주 2차 심의 진행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5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주요 예술활동실적(포트폴리오) 1부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모든예술31_시각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⑥ 유의할 점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의 결과로 지원 신청액과 결정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 발생시 전액 해당 공연 작품에 재투자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행사·홍보비]전반/증빙 필수
-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심의에 반영됩니다.

⑦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2023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 각 기관 홈페이지 CI 내려받기

⑧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이선화 031-290-4673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문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① 공모내용

- 2023년 경기도내 우수예술작품의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
(시낭송, 시극 발표 등)

② 지원규모 및 내용

예술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	최저
문학분야	작품 북토크 및 북콘서트 등 출간회 지원(시낭송, 시극발표 등) * 기존에 본인이 출간(발표)한 작품	개인	5,000천원	4,000천원
		단체	7,000천원	5,000천원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

③ 신청자격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공고일 이전 기준

④ 심의방식

• 심의기준

	심의지표	심의기준	배율(%)
역량 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 활동실적의 질적평가	20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 발전가능성 • 지속적 활동 가능성	20
기획력 평가	예술성	• 예술의 다양성에 기여하는가? •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가?	20
	보편성	•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가?	10
	완성도	• 사업계획은 구체적인가? • 성과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0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 지역예술활성화 기여도 평가 • 지역 콘텐츠 반영	10
가산점		• 지역 예술인(단체) 가산점	5
		• 전년도 우수예술활동 점수 반영	5

● 심의절차



※ 계획서 및 기존 작품에 대한 심의 위주 2차 심의 진행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응 조치에 따라 심의 방식과 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

⑤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포트폴리오 1부
- 기존 출간(발표) 작품 제출(PDF 제출)
- (화성시 거주/소재자로 가산점 해당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메일 제목 및 파일명 : 모든예술31_문학_지원자명(단체명)
 -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 전자우편으로 제출서류 및 자료 발송(artsupport@hcf.or.kr)
 -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서명한 지원서 원본 제출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접수여부는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개별 회신 예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⑥ 유의할 점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이 필수입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의 결과로 지원 신청액과 결정액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입금 발생시 전액 해당 공연 작품에 재투자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행사·홍보비]전반/증빙 필수
-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심의에 반영됩니다.

⑦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재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서적, 음반 등 인쇄물 : '이 책·음반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의 2023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을 지원받아 발간·제작되었습니다'의 문구 명시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로고 : 각 기관 홈페이지 CI 내려받기

⑧ 문의

-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이선화 031-290-4673
- 문의시간 평일 10시 ~ 17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3

2023 예술창작 협업지원 사업

- 분야별 예술 융·복합 협업 프로젝트를 통한 예술창작 실험과 예술활동 지원으로 협업 기회 확대 및 지역예술 인프라 확장
- 공모를 통한 예술협업 프로젝트 4건 이상 지원, 성과공유회 1회 운영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분야별 예술 융·복합 협업을 통한 예술창작 프로젝트 활동 추진비 지원
-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규모** 4건 이상(프로젝트별 지원금액 상이)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금** 60,000,000원

추진방향

- 관내 예술인(단체)의 서로 다른 분야 간 협업 예술 프로젝트 진행
- 협업을 통한 성장 기회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지역예술 네트워크 형성
- 융·복합 예술 활동을 통한 예술가와 향유자의 새로운 해석과 실험적 창조 독려

추진계획

- 2023. 1. ~ 3. 사업 설명회 및 공모 준비
- 2023. 4. ~ 5. 사업 공모, 심의 및 프로젝트 선정
- 2023. 5. ~ 11. 지원금 교부 및 협업 프로젝트 진행, 예술 활동 발표 모니터링
- 2023. 8. ~ 12.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2023. 12.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운영, 결과보고

2023년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 안내서

화성시 관내 공연장/전시장 안내

1

화성시 관내 주요 공연장 소개

개별적으로 대관 신청 및 가능여부를 알아보셔야 하며, 세부 대관료 또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대관 공모를 진행하는 공연장 이외에 재단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 협의를 통해 협조 요청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선정 이후).

연번	공간명	공간정보	공간위치	대관
1	반석아트홀	548석, 무대 400㎡	화성시 반송동 108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상반기/하반기 정기대관, 수시대관)
2	화성아트홀	682석(1층 478석, 2층 196석), 무대 600㎡	화성시 병점동 734	
3	누림아트홀	392석, 무대 315㎡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	
4	야외공연장	607석, 무대 175㎡	화성시 반송동 108	
5	클라쎄 아트홀	100석 규모, YAMAHA 그랜드피아노 C3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98-4	031-298-0744 문의
6	민들레 연극마을	야외 공간 및 간이극장	화성시 우정읍 이화백곳길 22	031-358-7587 문의
7	노작홍사용문학관 산유화극장	80석	화성시 석우동 64	홈페이지 (수시대관)
8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아이누리 극장	224석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홈페이지 (수시대관)
9	에이씨티그라운드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기술 및 예술의 복합 문화공간, 공간별 규모 상이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홈페이지 (수시대관)
10	각종 이음터 강당 및 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참고		

해당 안내는 수용인원 60명 이상 주요 공간에 대한 안내이며,
그밖에도 관내 카페, 한옥, 도서관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 아카이빙 - 문화공간 지도에서 더 많은 문화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화성시 관내 전시장 소개

개별적으로 대관 신청 및 가능여부를 알아보셔야 하며, 세부 대관료 또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대관 공모를 진행하는 전시장 이외에 재단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해 협의를 통해 협조 요청 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선정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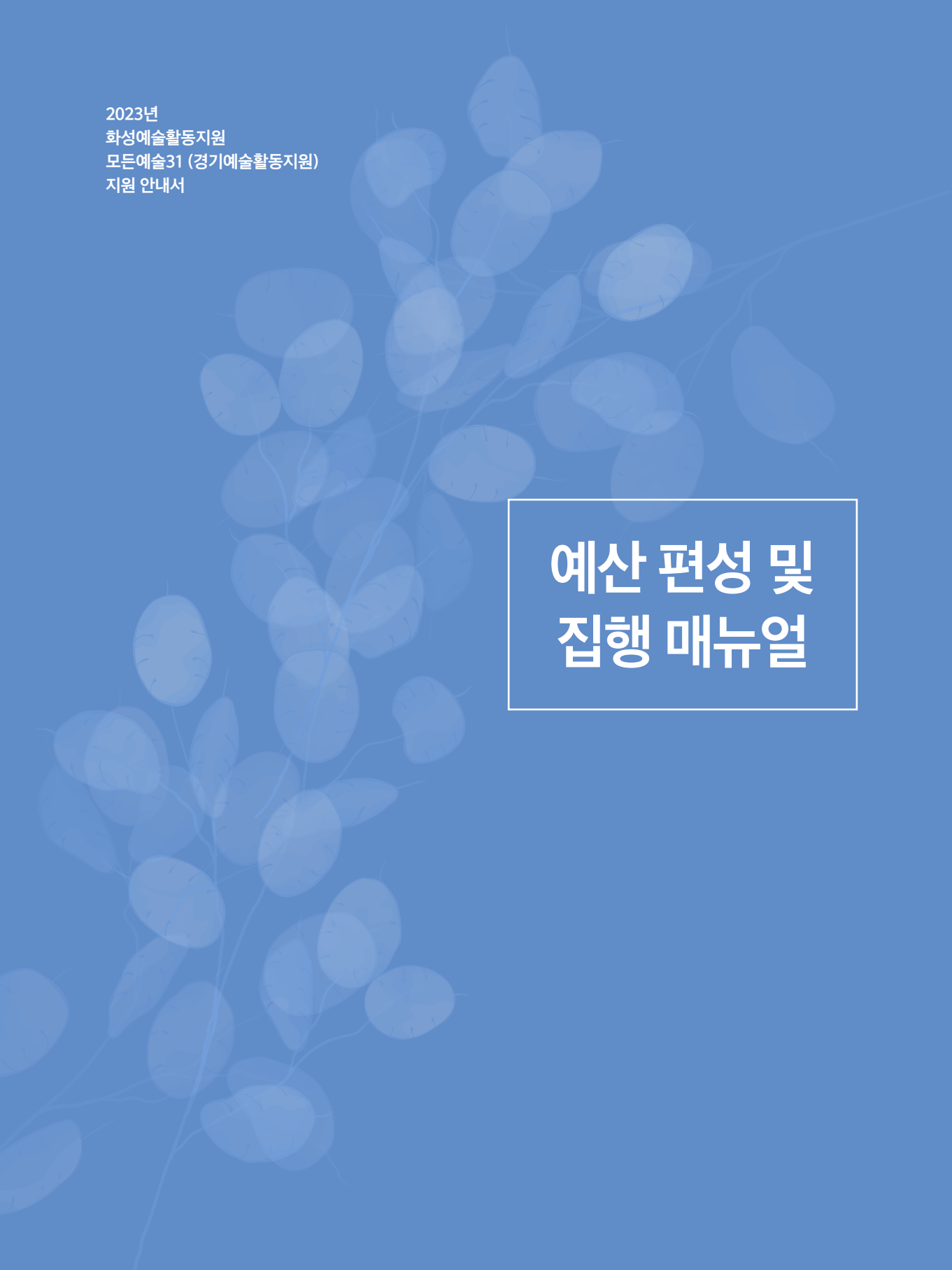
연번	공간명	공간정보	공간위치	대관
1	동탄아트 스페이스	동시대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 신진작가 발굴을 위한 공모전 등 역량있는 미술 작품 소개하는 전시공간	화성시 반송동 108, 동탄복합문화센터 1층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정기대관)
2	동탄아트 스퀘어	미디어아트 등 화성시민에게 폭 넓은 시각예술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전시공간	화성시 반송동 108, 동탄복합문화센터 B1층	
3	공평아트뮤지엄 아카이브	오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화성시 서남 부권 지역 문화플랫폼 기능	화성시 서신면 공평향로 1633	홈페이지 (수시대관)
4	에이씨티그라운드 화성 ICT 생활문화센터	기술 및 예술의 복합 문화공간, 공간별 규모 상이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홈페이지 (수시대관)
5	소다미술관	오랫동안 방치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문화재생 공간	화성시 안녕동 138-109	홈페이지 (협의필요)
6	엄미술관	조각가 엄태정의 작업공간 중 한 동을 아담한 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개관한 미술관	화성시 봉담읍 오궁길 37	협의필요

해당 안내는 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주요 전시공간에 대한 안내이며,
그밖에도 관내 유휴공간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 아카이빙 - 문화공간 지도에서 더 많은 문화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 안내서

2023년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경기예술활동지원)
지원 안내서



예산 편성 및 집행 매뉴얼

1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 추진근거 •

화성시문화재단 「화성문화예술창작 육성 활성화사업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사업 및 정산기간

지원받은 사업은 2023년 10월 29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보고서를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정산서 제출 마감 기한은 11월 20일입니다.

(결과물 제출 지연시 사업평가 불이익 있을 수 있으며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주요과정

구분	번호	절차	시기	설명
교부전	1	최종결과 발표	3 ~ 4월	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 개시일 2개월 전까지	지원결정액을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3	교부신청		• 지원금 전용통장 개설 • 지원금 통장 연결 체크카드 발급 • 교부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심의시 조건부 의결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예술단체인 경우 총 사업비의 최소 5% 해당하는 자부담금 의무 사용 • 회계검토비 책정 : 지원금 400만원 이상 수혜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지원금으로 회계검토비를 책정
교부	4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이후 집행 가능
정산	6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기한 : 2023. 11. 20.(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잔액 및 이자 반납

① 예산관련 사전 안내

●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 신청서 적정성 검토 : 교부신청서의 사업내용이 지원신청시 당초계획보다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보조금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 가능
- 보조금 취소 : 지원제한 사유(아래)에 해당할 경우 지원 선정 사후라도 지원 취소 가능

● 교부신청 이후 사업 변경

- 사전 재단 승인 : 보조금의 집행은 교부신청서상의 예산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 보조금 취소 : 사업변경이 당초 기대했던 사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가능

● 지원 제한 사유

재단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함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신청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4. 자체부담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7. 보조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② 예산편성

- **인건비성 사례비 편성제한**
 - 지원금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 초과하여 인건비성 사례비 편성 불가하나, 예외사항 아래 참고
 - 지원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예술창작지원(기획)]의 경우 상기 제한 없음
 - ※ '인건비성 사례비' :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통해 집행하는 예산을 의미함.
 - ※ 최종 심의결과 사례비 60% 편성 적합하다고 의결되는 프로젝트는 선정 이후 최종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 재편성
- **단체 대표자 사례비**
 - 예술활동 실현시(연주, 연기, 전시, 출간 등) 대표자 사례비 인정
 - 기획, 연출 등의 대표자 사례비는 미인정
 - 한도 : 지원금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
- **개인 본인 사례비**
 -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시 본인 사례비 인정
 - 한도 : 지원금 내 20%, 최대 150만원
- **자부담**
 - 예술단체인 경우, 지원금의 **5% 이상**을 자부담으로 책정(개인예술인 제외)
 - ※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자부담률 완화조치(2020~2023)
- **예술인 고용보험가입**
 - 사업시 의무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함(교부시 관련 세부내용 안내 예정)
- **홍보비 책정**
 - 전체 사업예산의 **10% 홍보비**(홍보물 제작, 광고선전비, 책자 제작 등) 책정 권고
- **회계검토비 책정**
 - 지원금 400만원 이상 신청하는 경우, 교부신청시 사업비 내에서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비를 책정

사업비(지원금+자부담)	회계검토비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50,000원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217,000원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290,000원

● 예산 편성 가능 항목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216 행사·홍보비목'에 따른 비용 전반을 예산으로 편성하나, 지원의 편의를 위해 임의의 과목을 만들어 구분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을 진행함.
- 지원사업자는 신청 및 선정된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구분	과목명	과목해소	증빙*	비고
1	사례비	공연자 등 개인에게 관련 사례비를 지불하는 항목	원천징수	서면계약 및 원천징수 필수
2	제작비	제작 업체 등에게 결제하는 항목	카드영수증 또는 세금계산 서(계산서)	- 카드영수증 : 간이영수증 안됨 - 세금계산서 : 전자발행 권고
3	대관료	장소 대관을 위한 대관료		
4	재료비	개별 재료 조달을 위한 구입항목		
5	기타 운영비	행사보험료 등 기타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6	홍보비	초청장, 홍보물, 현수막 제작 비용 및 광고선전 비용, 홍보영상 제작비용 등		

* 세부 증빙자료는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안내 예정

● 수익금 권고사항 사전 안내 및 수익금의 ‘인건비성 사례비’로 사용 가능

- 수익금의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사업 운영 및 수익금 발생 독려

구분	수익금 기준(권고)		수익금 활용
화성예술 활동지원	구분	기준(권고)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용 가능 ⇒ 사용가능 항목: 사업과 관련하여 <u>‘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 지원금 편성 가능 항목 전반</u>
	기획지원	수익금 미발생	
	창작활동 지원	화성시민 입장료 인당 5,000원 또는 무료 권고	
모든예술 31	구분	기준(권고)	
	우수예술 지원	인당 10,000원 이내 또는 무료 권고	

※ 수익금은 지원금과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해야 함

※ 수익금 관련 집행내역은 모두 증빙 가능해야 함

● 예산 편성 불가 항목

예산 편성 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회의 식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u>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u>

※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接客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③ 집행 및 정산 안내

● 집행원칙

- 집행방식

- 지원금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발행) 집행 원칙
- 통장에서 현금 인출 후 현금 집행 금지
- 지원금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관리 불가
- 이체수수료는 자부담으로 집행(집행 사후 입금 가능)

- 집행증빙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건별 집행과 동시에 적법하게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거래불인정

- 친족 간 거래
- 출연진(참여자)과 관련된 업체와 거래

●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 보조금 증빙서로 제출 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와 거주자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금납부영수증 총 3가지 서류 제출
- 신고 시, 해당 단체 고유번호(개인일 경우 주민번호)로 신고
- 사례비 지급 시, 세금 제외한 금액 입금

■ 사례예시

지출상황 : 김경기씨의 직업은 연출가. ○○워크숍에서 강연을 하여, 30만원의 사례비를 받기로 하였음

① 기타소득세 신고

② ○○합창단은 30만원의 8.8%인 26,400을 제외한 273,600원을 김경기씨에게 입금합니다. 그리고 26,400원은 세금 납부를 합니다.

- 납부방법

- 관할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 인터넷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지서 프린트 → 해당 은행 고지서 납부

※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해당 설명서 지원사업 선정 시 별도 메일 송부)

• 본인(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 대표자(본인) 사례비 세금 신고 및 납부

- 법인의 경우 : 대표와 출연자로서 출연계약을 작성하여 지급
- 개인사업 및 개인의 경우 : 원천징수신고의무자와 지급대상자가 동일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우며 원천징수 신고·등록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함
※ 정산서 제출 시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필첨

④ 지원금 정산 및
성과보고

• 정산서 회계검토

- 외부회계법인 : 사업비 400만원 이상시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산 진행. 회계검토가 완료되면 정산서 표지에 해당 회계법인이 발급한 검토보고서가 첨부

• 정산확정

- 정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음

•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집행 잔액' 및 지원금계좌에서 발생한 '예금결산이자'를 별도로 구분 정산하며 기한(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재단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반납관련 담당자 별도 연락 후 진행 요망)

• 성과보고서 및 성과물

- ※ 성과보고서 및 성과물은 지원사업의 필수제출자료이며(문학부문 포함),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평가결과는 차년도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성과보고서 :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 성과 등을 제3자가 파악 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
- 성과물 : 진행사진, 도록, 자료집, 관련 책자, 음반, 발간 사업 시 출판한 책 등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자료 취합.

⑤ 정산교육 일정

1) 1차 : 2023. 5. 25.(목)

2) 2차 : 2023. 9. 21.(목)

※ 교육시간은 추후 공지예정이며, 선정자의 경우 1회 이상 필수 참석.

발행처 (재) 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신아

예술지원센터 정은영

예술창작지원팀 유영임, 이선화, 박승비, 김지수

전화 031-290-4672~3

내지 편집 및 제작 디자인봄

표지 디자인 디자인 타임

※ 본 사업설명회 책자의 글과 도판은 화성시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23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공모 안내

ART CREATION SUPPORT

3.13.(월) ~ 3.19.(일)
접수기간
문의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팀 031 290 4673
www.hcf.or.kr 화성시문화재단 공고 확인



문화발전소 열터<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 동행(60min)>
*2022 화성예술가활동지원을 통해 공연된(창작연회극)작품입니다.